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468

발의연월일: 2025. 2. 26.

발 의 자:문진석・박정현・이건태

윤종군 • 복기왕 • 박성민

이재관 • 장종태 • 박용갑

이정문 · 김문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의 범위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시책에 따라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등으로 규정하면서, 이전공공기관에 한하여 이전지역 발전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혁신도시시책의 수립 전에 이미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공공기관(한국철도공사 등)의 경우 이전 시점만 다를 뿐 이전공공기관과성격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채용의무와 달리 이전지역 발전 계획의 수립·시행 의무에서 제외되어 있어 기이전기관에도 지역기여도 제고를 위하여 해당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이전지역 발전 계획의 경우 이전공공기관에 대해서 수립·시행 의무만 부과할 뿐 추진실적에 대한 유인체계가 미비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지역기여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이전기관의 경우에도 이전지역 발전 계획의 수립·시행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해당 계획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등 유인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1항 및 제5항 등).

법률 제 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본문 중 "지방시대위원회"를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지방시대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5조의2제5항 본문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제29조의3의 제목 중 "이전공공기관"을 "이전공공기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이전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을 "이전공공기관등은 이전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혁신도시"를 "이전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항 중 "이전공공기관"을 각각 "이전공공기관등"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이 우수한 이전공공기 관등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선정된 이전공공기 관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 기준, 방 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	제4조(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
획의 수립) ① ~ ③ (생	획의 수립) ① ~ ③ (현행과
략)	같음)
④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3	4
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지방	
이전계획을 검토·조정하여 국	
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u>স</u>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시대위원회(이하 "지방시대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	<u>위원회"라 한다)</u>
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시대위	
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다.	
제5조의2(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제5조의2(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의 수립·시행 등) ① ~ ④	의 수립·시행 등) ① ~ ④
(생 략)	(현행과 같음)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발전	⑤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 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⑥ ~ ⑨ (생 략)

- 제29조의3(<u>이전공공기관</u>의 지역 본 보전에 대한 기여) ① <u>이전공</u> 공기관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한다.
 - 1. · 2. (생략)
 - 3. <u>혁신도시</u> 주민 지원을 위한 지역공헌사업에 관한 사항
 - 4. 지방자치단체, <u>이전공공기관</u>, 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 간 협력에 관한 사항

지방시대위원
<u> গ্</u> ৰী
⑥ ~ ⑨ (현행과 같음) 세29조의3(<u>이전공공기관등</u> 의 지
역발전에 대한 기여) ① 이전
공공기관등은 이전지역
·.
②
 1 0 (취제 제 제 0)
1.·2. (현행과 같음) 3. <u>이전지역</u>
0. <u>1/2/17</u>
4이전공공기관
<u> </u>

- 5.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u>이전공공기관</u>의 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u>이전공공기관</u>은 제1항에 따른 계획과 추진실적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통보받은 계 획과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개하 여야 한다.
- ④ <u>이전공공기관</u>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신 설>

<u>이전공공기관등</u> 3 <u>이전공공기관등</u>
③ <u>이전공공기관등</u>
③ <u>이전공공기관등</u>
,
④ 이전공공기관등
1600/160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이 우수한 이전
공공기관등을 지방시대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선정
된 이전공공기관등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